

대법원 2014. 3. 21 자 2014마149 결정 [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등기청구권압류명령]

재판경과

대법원 2014. 3. 21 자 2014마149 결정

수원지방법원 2014. 1. 9 자 2013라2161 결정

전문

채권자, 재항고인 A

채무자, 상대방 S 주식회사

제3채무자 B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2014. 1. 9.자 2013라2161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압류를 구하는 채권자의 신청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그 자체가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성질상 양도 또는 금전적 평가에 의한 환가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이 사건 압류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경우에 보관인은 채무자명의로 권리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2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사집행규칙 제170조는 "민사집행법 제244조의 규정에 따라 인도 또는 권리 이전된 부동산의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부동산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자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압류하여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키고 부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시킨 다음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각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하게 하는 등으로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킴으로써 그 절차가 종료되며 그 절차 내에 환가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리이전청구권은 반드시 그 자체가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지거나 성질상 양도 또는 금전적 평가에 의한 환가가 가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 지분에 대한 말소는 지분말소등기의 방법이 아니라 잔존지분권자와

말소를 명한 지분의 진정한 권리자와의 공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바(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8403 판결 참조), 채권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채무자 명의의 경정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부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이유를 들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압류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압류의 대상 및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3. 21.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신